

본 계약서는 열람, 계약체결, 법원제출 등의 용도 외 무단복제, 제3자에 대한 유출 및 공개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 하여야 함

한우소  
갈비살

## 加盟契約書

점

---

한우소 푸드시스템  
HANUSO FOOD SYSTEM

- 전 문 -

## 제 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제2조 (용어의 정의)
- 제3조 (가맹점의 표시 및 계약당사자)
- 제4조 (영업표지)
- 제5조 (가맹점운영권의 부여)
- 제6조 (입지선정 및 영업지역)
- 제7조 (계약기간과 갱신)

## 제 2장 개점 준비

- 제8조 (가맹금과계약이행보증금)
- 제9조 (개점 전 교육·훈련)
- 제10조 (가맹점의 설비)
- 제11조 (추가품목의 구입 및 오픈 홍보·판촉)
- 제12조 (초도 물품의 주문)
- 제13조 (인·허가 및 초기 투자금의 납입과 위약금)
- 제14조 (개점 점검 및 승인)

## 제3장 영업활동의 조건

- 제15조 (로열티 및 공급품대금의 납입)
- 제16조 (개점이후 교육 및 훈련)
- 제17조 (비밀유지 의무)
- 제18조 (경업금지 의무)
- 제19조 (경영지도)
- 제20조 (감독 및 시정 요구권 등)
- 제21조 (영업의 표준화 및 취급품목, 판매가격)
- 제22조 (공급품 등의 조달과 관리)
- 제23조 (자점매입)
- 제24조 (공급품의 하자·반품)
- 제25조 (가맹점운영권의 제한)
- 제26조 (복장 및 영업시간)
- 제27조 (시설 및 기기의 유지 관리)
- 제28조 (회계자료 및 통지의무)
- 제29조 (광고)
- 제30조 (판촉)

## 제4장 계약의 해지 및 종료

- 제31조 (계약의 해지)
- 제32조 (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 제33조 (손해배상)
- 제34조 (가맹금 반환의 예외)
- 제35조 (영업의 양도 등)
- 제36조 (영업의 승계)

## 제5장 기타

- 제37조 (지연이자)
- 제38조 (통지방법)
- 제39조 (동의와 권리행사)
- 제40조 (계약의 효력 및 변경)
- 제41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 제42조 (보험)
- 제43조 (특약사항)

가맹본부 (주)하누소푸드시스템(이하 "갑"이라 한다)와 가맹점사업자(이하 "을" 이라 한다)는 본 가맹계약서에 열거된 각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하누소갈비살’ 가맹계약 (이하 "본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 전 문 -

1. 이 계약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관계법령을 기초로 "갑"과 "을"간의 공정한 가맹계약 체결을 위해 그 계약조건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갑"의 상호, 상표, 공급품 일체 및 그 가맹점 조직은 "갑"의 상당한 시간과 비용 및 기술, 용역을 투입하여 개발한 것이다. 이의 특징은 매장내의 특이한 장식과 색채, 비품, 복장 등의 활용에 있고, "갑"에 대한 표시는 상호·상표 등으로 나타낸다.
3. "갑"은 ‘하누소갈비살’, ‘하누소푸드시스템’ 이라는 상호·상표 등으로 표시되는 공급품과 서비스의 판매를 위한 경영 및 영업활동의 방법과 교육, 지원 등에 관한 표준적이고, 독특하며, 통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4. "갑"은 ‘하누소갈비살’ 라는 상호·상표 등과 관련된 모든 권리·이익 및 이와 관련된 파생적 상표나 노하우 등에 대하여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5. "갑"은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갑"의 명성 유지를 위하여 "을"의 자의적인 메뉴개발·판매·공급제품 사용을 금지하며 "을"에게 적절한 경영지도와 통제를 할 수 있고 "을"은 이를 인정하고 수용하여야 한다.
6. "갑"과 "을"은 각자 독립된 사업체이며 "을"은 "갑"과 체결한 약정상에 명시적으로 부여 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가진다.
7. "을"은 "갑"의 가맹점으로 참여함으로써 "갑"의 경영이념에 적극 동참하고 "갑"의 경영방침과 영업지도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갑"과 "을"의 경영목표 달성과 상호이익 증진을 통한 지속적인 제휴관계를 유지하기로 한다.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의 ‘하누소갈비살’ 가맹사업(이하 "가맹사업"이라 한다)에 가맹점으로 참여하여 ‘하누소갈비살’ 가맹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한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며, 상호신뢰와 협조로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동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1. "가맹계약"이라 함은 "갑"이 "을"로 하여금 본 계약에 따라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갑"이 지정하는 품질 기준과 기타 영업방식에 의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고 아울러 "을"의 영업과 관련하여 일정한 통제 및 지원을 할 것을 약정하며, "을"은 영업표지의 사용 허가와 영업상 통제 및 지원에 대하여 일정한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을"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자, "갑"을 말한다.
3. "가맹점사업자"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자, "을"을 말한다.
4. "지정업체(또는 협력업체)"라 함은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반 인테리어, 설비, 물품 등에 대하여 "갑"이 지정하여 "을"과 거래하는 업체를 말한다.
5. "공급품"이라 함은 "갑"이 ‘하누소갈비살’ 가맹사업의 목적상 제조, 구입 또는 알선하여 "을"에게 공급하는 일체의 품목을 말한다.
6. "메뉴"라 함은 "을"의 가맹점에서 판매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7. "인테리어"라 함은 가맹점의 내부의 실내장식을 말하며 이는 "갑"이 제공하는 인테리어 디자인 컨셉을 기준으로 한다.
8. "주방기기 및 집기"라 함은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주방 설비품목 및 집기를 말한다.
9. "추가품목"이라 함은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품목 중 가맹점 구조 및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설비와 구입되는 품목을 말한다.
10. "기타물품"이라 함은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주방집기를 제외한 물품을 말한다.
11. "요구품목"이라 함은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위하여 "갑"또는 "갑"이 지정한 구입처로부터 공급 받아야 하는 품목을 말한다.
12. "권유품목"이라 함은 "갑"이 정한 기준에 맞추어 "을"이 직접 또는 "갑"이 지정한 품목 중 선택하여 구입 할 수 있는 품목을 말한다. 이 경우 반드시 "갑"의 사전 품질 검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갑"이 "을"에게 제공한 가맹점 오픈 및 경영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하며 이는 매뉴얼 및 기타 문서, 도면, 구두 등으로 제공된다.
  - 가. 가맹점의 구조, 내·외장, 가맹점 내 배열, 가맹점의 설비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
  - 나. 각종 메뉴 조리 노하우
  - 다. 각종 물품 등의 구입처
  - 라.接客방법, 판매가격, 기타 판매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
14. "경쟁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갑"의 영업과 동종 또는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 (가맹점의 표시 및 계약당사자)

1. 본 계약에 의하여 "을"이 개설하게 되는 가맹점의 표시는 별첨 1과 같다.
2. 본 계약상의 계약자와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 및 임차계약서 상의 계약자(자가 점포인 경우 소유주)는 동일인이어야 한다. 만약 위 세 계약당사자 중 어느 하나라도 상이한 경우에는 그 다른 계약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본 계약서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3. "을"은 별첨 1의 가맹점 표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의 내용 및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 "갑"의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4조 (영업표지)

1. "갑"은 영업표지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2. "갑"은 "을"에게 다음의 BI를 사용하여 ‘하누소갈비살’ 가맹점을 운영할 것을 허락 하며 "을"은 이를 사용하기로 한다.

명 칭	이 미 지
한글 : 하누소갈비살	

3. 제2항의 BI뿐 아니라 가맹사업에 관한 모든 지식재산권은 "갑"의 독점적인 권리이고 "을"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이를 사용할 수 있다.

- (1) 별첨 1에 표기된 가맹점소재지(이하 "가맹점소재지"라 한다)에서 "갑"이 보유한 영업표지를 "갑"이 지정한 위치의 간판 및 인테리어 시설물("갑"이 최초 승인한 인테리어 도면에 의한 시설물)에 이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권리
- (2) 기타 "갑"의 서면동의를 얻어 가맹점소재지에서 "갑"의 영업표지를 판촉 홍보활동 등에 사용할 권리
4. "을"은 갑이 공급하는 공급품 및 기타 가맹점 설비 등에 부착된 "갑"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영업표지를 훼손 또는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범위 외에 사용하거나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이를 최선의 상태로 유지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
5. "을"은 자체 법인명의 등 법적인 명칭과 기타 통용되는 명칭에 "갑"이 현재 사용 중 이거나 신청 중인 명칭, 또는 변경된 명칭 등을 사용하지 못한다.
6. 제2항의 영업표지에 대하여 "갑" 및 가맹점사업자 모두의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갑"은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협조 하여야 한다.
7. "갑"이 사용을 허락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 만료, 소유권(사용권)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이를 "을"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갑"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을"은 변경된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을"은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8. "을"은 제6항 및 제7항에 의거 영업표지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기 전의 영업표지는 사용할 수 없고, 이러한 영업표지가 부착된 상품과 기타 점포설비 등은 "갑"의 요청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9. 영업표지가 변경되는 경우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제반 비용은 양 당사자의 귀책정도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 제5조 (가맹점운영권의 부여)

1. "갑"은 "을"에게 제6조의 영업지역 내에서 '하누소갈비살'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한다. 다만, 그 범위에 관해서는 개별 조항에서 구체적으로 정한다.
  - (1) "갑"이 사용 허락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하누소갈비살'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
  - (2) "갑"으로부터 '하누소갈비살' 가맹점 운영을 위한 공급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
  - (3) 가맹점을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을" 또는 "을"의 직원이 "갑"으로부터 지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4) "갑"과 "을"의 공동 이익 증진을 위해 "갑"이 주도하는 공동 광고, 판촉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5) 기타 "갑"이 보유하고 있는 권리로서 "을"과 협의하여 정한 사항

2. 전 항의 가맹점운영권은 "을"의 본 계약 상의 의무불이행 등으로 인해 제한 될 수 있으며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소멸된다.

#### 제6조 (입지선정 및 영업지역)

1. "갑"은 영업지역을 구분하고 "을"은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한다.
2. 전 항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갑”은 해당지역의 행정구역 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을"에게 조언을 할 수 있다.
3. "을"의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갑"이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 결정은 "을"이 하며, 점포의 매출액 및 수익액은 "을"의 관리능력이나 여건의 변화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과 점포 오픈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 및 상가규약 등의 확인은 "을"의 책임임을 확약한다.
4. "을"이 선택한 영업지역에 대하여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지도로 표시 하여 첨부(별첨 2)하고 그 범위 내에서 가맹점 운영권을 인정한다.
5. "갑"은 "을"의 영업지역 내에 가맹점 운영상 영향을 줄 수 있는 본 계약의 내용과 동일한 가맹점 및 직영점을 설치하지 않는다. 단, 갱신 시 영업지역의 개발이나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을"의 영업지역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갑"은 "을"과 협의하여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6. 동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갑"의 하누소갈비살' (사업형태가 동일한 사업의 종류를 포함한다) 외의 다른 브랜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갑"은 "을"의 영업노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다.
7. "을"의 영업지역 내의 "을"의 가맹점 운영(오프라인)과 "갑"의 온라인 영업은 별개로서 "을"은 이에 대하여 "갑"에게 영업지역을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7조 (계약기간과 갱신)

1.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년간 유효하다. 다만 갱신 시에는 1년씩 계약이 연장된다.
2. "갑"은 "을"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의 계약 갱신 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 (1) "을"이 "갑" 또는 지정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 (2) "을"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 하지 아니한 경우
  -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갑"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을"이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 다. "갑"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 라. "갑"이 "을"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3. "갑"이 제2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한다.
  4. "갑"이 제3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을"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본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1년간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을"이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갑" 또는 "을"에게 천재지변이나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장 개점 준비

### 제8조 (가맹금과 계약이행보증금)

1. "을"은 "갑"에게 최초 가맹계약시 가맹비(별첨 3)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가입비
  - (2) 가맹점 운영 기본교육 제공 교육대가
  - (3) 최초 가맹점 오픈을 위한 정보·제공의 대가
  - (4) 가맹점 개점을 위한 인력지원의 대가
2. 전 항의 가맹비는 가맹점 개점을 위한 제반 비용으로서 가맹점 개점 이후 반환 되지 않는다. 다만, 가맹점 개점 이전 해약 시에는 전 항의 가맹비는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된다.
3. "을"은 "갑"에게 최초 가맹계약시 교육비(별첨 3)을 지급하여야 한다. 교육비는 "갑"이 "을"에게 ‘하누소갈비살’ 운용을 위해 제공하는 기본교육의 대가이다.
4. "을"은 "본 계약"의 이행 및 채무(로열티, 공급품의 대금등)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당시 "갑"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별첨 3)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 전 항의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는 "갑"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잔존 채무와 손해배상액을 정산하여 잔액을 상환하고 정산서를 교부한다.
6. "을"은 본 조의 가맹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 5에 따라 "갑"이 지정하는 기관에 예치(별첨 3)하여야 한다.

### 제9조 (개점 전 교육·훈련)

1. "을"(양수인 및 업무위탁·대리행사를 포함한다)은 ‘하누소갈비살’ 가맹점으로서 효율적인 가맹점 운영을 위하여 "갑"이 정한 개점 전 교육훈련 프로그램(기본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2. 개점 전 교육·훈련은 교육·프로그램의 일정에 따라 진행되며 "을"은 기본인원(2명)에 대하여 개점 전 교육·훈련을 수료 하도록 하여야 하고, 미 수료 시 "갑"은 가맹점의 개점을 불허 할 수 있다.
3. "을"은 개점 전 교육·훈련에 대하여 기본인원(2명) 이외에 추가인원의 교육을 원할 경우 "갑"과 협의 하여 추가교육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4. "갑"은 개점 전 교육·훈련 종료 시 교육대상자들의 교육수료 결과를 판단하기 위해서 개점에 필요한 최소한의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추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5. 개점 전 교육·훈련은 ‘하누소갈비살’ 기본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실시된다. 다만, 사정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다.

#### 제10조 (가맹점의 설비)

1. "을"은 가맹점 개점일 전까지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갑"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갑"의 실사와 검토를 통하여 인테리어 및 간판 설치, 주방기기 및 집기 구입, 기타물품 구입 등(이하 "가맹점의 설비"라 한다)을 자신의 비용으로 완료하여야 한다.
2. "을"은 "가맹점의 설비" 중 권유 부분에 대하여 "갑"이 정한 사양에 따라 직접 또는 "갑"이 지정한 업체를 통하여 가맹점의 설비를 할 수 있다.
3. "을"은 "갑"이 지정한 업체에 "가맹점의 설비"를 의뢰하는 경우, 별도의 가맹점 설비 의뢰서를 작성한다.
4. "을"이 "가맹점의 설비" 중 권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가맹점의 설비를 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관련도면 및 시방서, 간판 디자인 시안, 기타 물품 구입 정보(이하 "가맹점 설비 정보"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가맹점 설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직원을 파견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관리한다. 이 경우, "갑"은 시설물에 대한 책임은 일체 지지 아니한다.
5. 전 항과 관련하여 "을"은 "갑"의 "가맹점 설비 정보"의 제공 및 검수비용(이하 "검수비"라 한다)로 전체 인테리어 비용의 5%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갑"의 "지정업체"를 통하여 가맹점의 설비를 하는 경우, 검수비는 제외되며 일부만을 의뢰할 경우, "갑"은 검수비를 일부 감액할 수 있다.
6. "을"이 전 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합의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갑"은 제4항의 의무가 없으며 "갑"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1조 (추가품목의 구입 및 오픈 홍보·판촉)

1. "을"은 가맹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추가품목의 구입 및 설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을"은 추가품목에 대하여 가맹점의 구조, 입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영업전략상 "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입 및 설치하여야 하며 "갑"이 제시하는 기준에 의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을"은 가맹점 오픈 시 "갑"이 지정한 방법에 따라 효율적인 가맹점의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 및 행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을"에게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 경우, "을"은 "갑"에게 그 방법을 제시하고 상호 협의하여 홍보행사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3. 전 항의 홍보물 제작을 "을"이 직접 하는 경우 "을"은 "갑"의 영업표지 사용에 대한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2조 (초도 물품의 주문)

1. "을"은 가맹점의 개점과 고객들 수요 충족을 위하여 가맹점 규모별로 초도 물품을

- 개점 전까지 "갑"과 협의하여 "갑"에게 주문하여야 한다. 다만, 초도물품 중 권유 품목의 경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2. 전 항 단서에 따라 권유 품목에 대하여 "을" 자신이 직접 구입하는 경우, 개점 2일 전까지 자신의 가맹점에 구비 완료하여야 한다.
  3. 가맹점 개점 전 초도 물품의 납품가격은 "을"의 가맹점에 공급시 납품가격으로 결정되며 시장상황 또는 "갑"의 사정에 따라 가격이 변동 될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사전 통보하고 변동된 납품가격으로 공급한다.

### 제13조 (인·허가 및 초기 투자금의 납입과 위약금)

1. 가맹점설비 관련 또는 본 계약에 따른 가맹점 운영을 위한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등 개업시 필요한 증명서등의 제반 인·허가는 영업개시일 전까지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취득하거나 필요에 따라 갱신한 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제 1항에 대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을"에게 있다.
3. "을"은 제8조의 이행을 위해 "갑"에게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별첨3의 대금 지급방법(예치 포함)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이때 "을"의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개점 해약을 요청할 경우 "갑"은 "을"에게 지급 받은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위약금 규정에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한다.

해약 요청 일자	위약금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	예치금의 10%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10일 이내	예치금의 30%
계약 체결 후 10일 이후 가맹점 오픈 이전	예치금의 50%

### 제14조 (개점점검 및 승인)

1. "을"은 개점일 전일까지 구입 및 설치를 의뢰한 "가맹점"의 설비, 추가품목, 초도 물품등에 대하여 점검을 완료하여 "갑"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 "을"은 "갑" 또는 "지정업체"에게 지급기한까지 금전의 입금을 완료하고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을"의 통지 태만으로 인하여 개점이 지연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을"이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진다.
3. "을"은 개업에 앞서 직접 실시한 가맹점의 설비와 추가품목, 초도 물품의 구입 등에 관하여 "갑"이 정한 기준과 사양을 준수하였는지와 시설공사의 완전성, 가맹사업의 이미지 통일성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개점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개점 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 (1). "을"의 가맹점에 적정 매장근무자가 채용되지 않아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 (2) "을"이 제8조 내지 제13조의 이행을 완전하게 완료하지 못한 경우
- (3) "을"이 "갑"또는 협력업체에게 지급할 금전의 입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 (4) 그 밖의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개점이 연기 되는 경우
- 5. "갑"은 "을"에게 전 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개점승인을 한다.

### 제3장 영업활동의 조건

#### 제15조 (로열티 및 공급품 대금의 납입)

1. "을"은 "갑"이 소유하고 있는 영업표지 및 기타 지식재산권 사용 등 가맹점운영권을 지속하기 위한 대가로 월 매출액의 1%의 로열티를 "갑"에게 매월 10일 "갑"의 계좌 또는 "갑"이 지정한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납입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매월 10일 지급 되는 전 항의 월 로열티(이하 "정기지급액"이라 한다)는 지급된 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에 대한 대가이다.
  - (2) "을"이 POS를 사용하는 가맹점 사업자인 경우에는 "매출액"의 산정기준은 "을"의 당월 POS상 판매된 총 매출액을 월 매출액으로 정하며, 이를 위하여 익월 1일까지 "을"은 "갑"에게 POS상 총 매출액을 제공하여야 한다. 단, POS상 총 매출액을 누락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정황이 발견된 경우나, POS상 총 매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월 물품금액의 '2.5'를 곱한 금액을 총 매출액으로 본다.
  - (3) "정기지급액"은 납입일 10일에 입금 되지 않을 경우 "을"은 지연이자 규정에 따라 연이율 20%의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1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공휴일이 끝나는 날의 익일에 자동이체 되는 것으로 한다.
  - (4) 단, 최초 계약기간(2년)의 로열티는 면제한다.
2. "을"은 "갑" 또는 협력업체로부터 공급 받는 공급품에 대한 대금을 배송1일전(D-1) 오전까지 선불로 납입하여야 하며 "을"은 물품 입고 시 그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갑"에게 바로 알려야 한다. 이때 공급품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갑"은 공급 물품의 공급을 중단 할 수 있으며 "을"은 제37조 1항에 의거한 지연 이자규정에 따라 연이율 20%의 가산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 제16조 (개점이후 교육 및 훈련)

1. 개점이후 교육의 종류는 보수교육, 재교육으로 구분한다.
2. 보수교육은 "갑"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맹점에 반드시 필요한 통지사항, 실무 교육 및 의견수렴이 있을 경우 실시한다.

3. "을"은 보수교육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필수적으로 참석하여야 하며 보수교육에 대한 기본 교육비는 무료이지만 전문 강사비 및 워크샵비, 재료비 등이 발생할 경우, 참가비용이 별도로 부가될 수 있다.
4. "갑"은 가맹점개설 후에도 "을"의 가맹점관리 및 근무자들의 교육상태가 미흡하여 가맹점으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재교육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는 가맹점 방문점검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이때 "을"은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17조 (비밀유지 의무)

1. "갑"은 "을"에게 영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이 제공한 각종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이나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어떠한 목적으로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을"은 그 직원에 의한 전 항의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의 책임을 부담한다.
3. 본 조 제2항의 의무는 본 계약의 성립시점부터 종료한 후 3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지속된다.

#### 제18조 (경업금지 의무)

1. "을"은 "본 계약"의 존속기간 중에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갑"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동종사업(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을 포함한다)을 경영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을"은 계약종료 후 "갑"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갑"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9조 (경영지도와 특별 경영지도)

1. "갑"은 "을"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점포관리자(SV), 배송담당자 등을 파견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가맹점의 경영지도를 할 수 있다.
  - (1) 계약이행(Contract) :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통한 '하누소갈비살' 브랜드의 명성 유지에 대한 여부 확인
  - (2) 표준화(Standardization) :  
"갑"이 제공하는 표준화된 서비스의 유지 및 각 메뉴의 특성을 제고하는 방법 등에 대한 지도

- (3) 시장조사(Market Research) :  
가맹점의 영업환경 및 시장변화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분석 지도
  - (4) 판촉(Sales Promotion) :  
신규 고객 창출 및 판매 촉진활동 지도
  - (5) 가맹점의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석 및 지도
2. "을"은 "갑"의 효과적인 경영지도를 위하여 "갑"이 요청하는 자료를 지정한 기간내에 성실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을"은 "갑"이 제공하는 제1항 각 호에 의한 경영상의 정당한 지시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4. "을"은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갑"에게 특별 경영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5. "을"로부터 특별 경영지도 요청을 받은 "갑"은 이를 검토한 후, 경영지도계획서를 "을"에게 제시할 수 있으며 "을"은 "갑"과 협의하여 일정과 범위를 결정한다.
  6. "갑"은 특별 경영지도 결과와 그 개선방안을 "을"에게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 제20조 (감독 및 시정 요구권 등)

1. "갑"은 "을"의 가맹점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뉴얼 등에서 제시한 관리 기준에 의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갑"의 직원을 통하여 "갑"이 정한 규정 이외의 품목 취급 여부, 공급품의 보관상태, 위생상태, 회계관리 등 매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관리·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전 항의 가맹점 방문 점검 결과는 "갑"의 직원이 "을" 또는 "을" 매장의 관리자(직원 및 근무자)에게 통보하고 상호 공유한다.
3. "을"은 가맹점운영에 관하여 건실한 자금관리 관행을 가져야 하며 "갑"이 요구할 시 판매실적 등을 "갑"이 요구하는 양식에 의거·작성하여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점검이나 기타 가맹점의 재고·유지관리 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자신의 가맹점에 출입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21조 (영업의 표준화 및 취급품목, 판매가격)

1. "을"은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표준화를 위해 "갑"이 제시하는 가맹점 운영지침 및 매뉴얼 등을 준수해야 하며, "갑"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을"은 반드시 "갑"이 제시하는 공급품 또는 서비스의 적절한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해치지 않도록 "갑"으로부터 승인 받은 메뉴만을 고객에게 판매·제공하여야 한다. 아울러 "을"은 취급하는 메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갑"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을"은 가맹사업의 브랜드 통일성 및 서비스의 균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갑"이 제시한 품목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매뉴얼에 의한 메뉴 및 서비스의 균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시 품목은 부분 변동이 있을 수 있다.

4. "을"은 요구품목에 대해서는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지정업체로부터 공급 받아야 하며 그 외의 권유품목에 대해서는 "갑"이 지정한 "지정업체"에게 공급을 의뢰하거나 직접 구입할 수 있다. 다만, 권유 품목일지라도 반드시 "갑"이 제시한 품질기준을 준수하고 직접 구입시 "갑"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갑"은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을"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위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갑"과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 제22조 (공급품 등의 조달과 관리)

1. "갑"은 자신 또는 "지정업체"를 선정하고 '하누소갈비살'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공급품을 "을"에게 공급한다. 다만, "갑"의 경영방침에 따라 공급품의 종류 및 "지정업체"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1) "갑"이 지정한 요구 품목
  - (2) "갑"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소모품과 비품
  - (3) "갑"이 지정한 권유 품목
  - (4) 기타 "을"이 "갑"에게 구입을 의뢰한 공급품
2. "을"은 전 항 각 호의 공급품에 대하여 "갑"이 지정한 방법에 따라 주문할 수 있다.
3. "갑"은 "을"이 주문한 제1항 각 호의 공급품에 대하여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업체의 배송일정에 따라 공급품을 공급하거나 공급 지시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을"의 주문 오류에 의한 경우
  - (2) "갑"이 보유하지 못한 상품의 경우
  - (3) 외상 매출금 미결제에 의한 배송 중단 및 결제 후 배송일 이외의 일자에 배송을 요청하는 경우
  - (4)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공급품의 공급이 지연 되는 경우
  - (5) 국제간 마찰로 인하여 공급품 수입이 지연 되는 경우
  - (6) 통상적인 공급량을 초과한 수요로 인한 절품의 경우
  - (7) "갑"과 "을"이 협의한 경우
  - (8) 기타 거래관행상 인정되는 정상적인 물품공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사유
  - (9) 또는 "갑"의 귀책사유로 돌릴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전 항의 배송일정과 관련하여 "을"은 "갑"이 지정한 주문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갑" 또는 "지정업체"의 배송 시 "을"의 수령지체(매장 부재 시 등)가 있는 경우 "갑" 또는 "지정업체"는 무검수 입고 할 수 있다. 다만, "을"은 입고한 물량에 대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6. 전 항과 관련하여 공급한 물량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갑" 또는 "을"은 전수 검수를 실시할 수 있다.



7. "을"은 "갑" 또는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공급품의 품질을 인수, 보관, 판매시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취급상품 중 유효기간 경과 및 변질품은 즉시 폐기해야 하며, 상품 관리 태만으로 인해 관계 법령을 저촉시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을"이 진다.
- 8 "갑" 또는 "지정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공급품의 위험부담은 그 인도 시기를 기점으로 하여 "을"에게 이전된다. 다만, 매매대금이 완불될 때까지 소유권은 공급자에게 유보 되는 것으로 본다.
9. "을"은 "갑" 또는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공급품을 매장고객 판매용도 외에 외부에 판매하거나 "갑"과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0. "갑" 또는 "지정업체"가 공급하는 물품의 공급가격은 "갑" 또는 "지정업체"가 정하며, 시장상황이나 "갑" 또는 "지정업체"의 사정에 따라 그 가격은 유동적일 수 있다. 다만, "을"은 그 가격이 부당하다고 판단 될 경우 근거 자료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가격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최종 결정은 쌍방 간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 제23조 (자점매입)

1. "을"은 제2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공급품에 대하여 ‘하누소갈비살’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갑" 또는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직접 공급품을 구매할 수 있다.
  - (1) "갑" 또는 "지정업체"가 공급하지 않는 품목의 경우
  - (2) "을"이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공급품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자점 매입 승인을 얻은 경우
  - (3) "갑" 또는 "지정업체"의 귀책사유로 제2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공급품 공급을 5일 이상 지체하는 경우
2. 제1항 각 호의 경우에도 "갑"이 제시하는 공급품 품질기준에 부합해야만 한다.
3. "을"이 제1항의 단서에 의하여 직접 구매하는 공급품에 대해서 "갑"은 언제든지 그 품질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품질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24조 (공급품의 하자 및 검사와 반품)

1. "을"은 공급품을 공급 받는 즉시 수량 및 품질을 검사한 후 하자 유무를 서면 또는 구두로 "갑"또는 "갑"의 "지정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2. "갑"이 직접 공급한 공급품의 성질상 수령 즉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1주일 이내에 이를 발견하여 "갑"에게 통지하고 정상적인 물품으로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공급품은 원형으로 파손, 변질이 없이 보존되어야 하며 변질되기 쉬운 물품의 경우 인도 즉시(무검수 입고 시 24시간 이내)반품 또는 교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3. "갑"은 자신이 공급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으나 "지정업체"가 하자를 알면서 물품을 공급한 경우, "지정업체"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
4. "을"이 검사를 태만히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품·교환·수량 보충·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갑" 또는 "지정업체"가 공급한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공급한 자가 책임을 진다. 그러나 "갑" 또는 "지정업체"가 공급하지 않은 물품 또는 "을"이 보관상의 잘못 및 관리 소홀로 발생한 손해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 "갑"이 "을"에게 인계한 후 공급품이 변질한 경우 등).

### 제25조 (가맹점운영권의 제한)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사유가 있는 경우, 구두 경고 후, 시정이 되지 않을 시 일주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한 후, "을"에 대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는 등 가맹점운영권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재공급 등의 제한 해제 조건을 지체 없이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2항및 제3항의 가맹계약서상의 가맹점 표시와 계약당사자관련 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4조 제3항에서 "갑"이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가맹본부의 서면 동의없이 영업표지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3. 제4조 제4항을 위반하여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4. 제15조에 로열티 및 공급품 대금의 납입을 연체한 경우
5. 제16조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 및 재교육의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6. 제17조 제1항 내지 2항의 영업비밀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 피해를 준 경우
7.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경업행위를 하는 경우
8. 제20조 제1항에 의한 "갑"의 지도감독 후,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9. 제21조 제1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하여 "갑"이 제시하는 매뉴얼 준수, 지정메뉴 운영, 요구 및 권장품목 사용하지 않아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저해할 경우
10. 제21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갑"이 제시한 메뉴 및 제품 판매가 준수를 하지 않고 사전 협의 없이 가격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1. 제22조 제9항을 위반하여 "갑"이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매장고객이 아닌 외부에 판매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판매한 경우
12. 제23조를 위반하여 "갑"이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는 물품을 임의로 자점매입을 하거나 품질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13. 제26조 가맹점의 영업시간 규정을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하는 경우
14. 제27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맹점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노후화된 시설의 보수·교체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경우
15. 제27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가맹점의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16. 제28조의 가맹점 회계자료의 제공과 영업 변동사항 통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17. 제29조 규정의 공동 광고비 부담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18. 제30조 제2항 및 제5항의 공동 판촉활동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19. 제3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갑"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판촉활동을 하거나 팸플릿, 리플렛, 카다로그, 쿠폰등을 제작, 브랜드 통일성 및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20. "을" 이 "갑"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제35조 제1항의 "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21. 기타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여 "갑"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

#### 제26조 (복장 및 영업시간)

1. "을"의 매장에서 근무하는 자(이하 "매장 근무자"라 한다)는 "갑"이 지정한 복장을 준용하여 착용하여야 한다.
2. "갑"은 "매장 근무자"의 복장의 색깔, 규격을 매뉴얼 등을 통하여 통지한다.
3. "을" 및 "매장 근무자"가 매뉴얼의 복장규정을 지나치게 벗어나 매장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을"은 최소영업일 월26일 이상을 준수하여야 하며 10:00시 개점하여 22:00시 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27조 (시설 및 기기의 유지 관리)

1. "을"은 청결한 가맹점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을"은 전 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갑"과 경영지도 체크 시 사전협의를 거쳐 점포환경개선을 위해 노후화 된 시설을 교체·보수하여야 한다.
3. "갑"은 가맹사업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맹점의 실내장식, 시설, 각종의 기기를 교체·보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갑"과 합의하여 가맹점의 실내장식, 시설, 각종의 기기를 교체·보수 하여야 한다. 이 때 "갑"과 "을"은 교체·보수의 범위에 관하여 합의하고 가맹점 시설의 교체·보수에 관한 비용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갑"과 "을"이 부담한다. 이 때 "갑"의 부담비율은 점포의 이전확장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는 20% 이내, 수반하는 경우는 40% 이내로 한다.
4. "을"은 인테리어 및 기타 품목의 보수에 대하여 해당 공급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5. 제3항의 경우 "을"은 교체·보수기간을 "갑"에게 통지해야 하고,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이유를 명시하여 소정기일 내에 보고하여야 하며, "갑"은 정당한 이유없이 신품의 교체를 강요할 수 없다.
6. "을"은 별첨1의 소재지 상의 가맹점 내의 가맹점의 설비를 "갑"의 사전 서면 승인없이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8조 (회계자료 및 통지의무)

1. "을"은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와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2. "을"은 공급품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갑"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을 하여야 한다.
3. "을"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갑"의 정보등록을 위하여 연 매출액에 대하여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을"은 본 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 확인과 기록을 위한 "갑"의 직원이 출입, 조사 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5. "을"은 사업장소, 대표자 및 가맹점관리자 인적 사항 등 사업자 등록 또는 영업 상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을"은 "갑"으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영업표지 및 지식재산권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인하여 제3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9조 (광고)

1. "갑"은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하누소갈비살'의 브랜드광고,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등을 총괄하며 "갑"의 경영적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광고에 사용되는 소재와 매체, 횟수, 시행일자 및 기간 등의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2. 전 항에 따라 시행되는 광고활동비는 "갑"과 "을"이 부담하는데 "을"의 부담금은 "을"의 직전 분기 월 평균 매출의 1%이내에서 "을"이 부담할 수 있다. 이때 "을"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갑"이 시행하는 공동 광고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3. "갑"은 "을"에게 공동 광고비 부담을 요청하는 경우, 광고 실시 최소 1개월 이전에 그 광고의 성격과 전체 비용 및 각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광고비를 통지한다. "을"은 이 때 광고실시 10일전까지는 "갑"에게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 제30조 (판촉)

1. 판촉 활동은 각 가맹점 별로 시행하는 개별 판촉활동과 전국 또는 지역단위 가맹점 및 직영점에 공통으로 적용되어 시행되는 공동 판촉활동으로 구분된다.
2. 개별 판촉활동은 "을"이 가맹점 오픈 후 단독으로 시행하는 판촉활동으로서 "을"은 매장의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자신의 노력으로 판촉활동을 실시하여야 하며 "갑"의 지도와 통제가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 판촉활동을 진행하여야 한다.
3. 공동 판촉활동은 "갑"이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규모 및 지역 단위의 할인 판매, 경품제공, 이벤트 등과 같은 판촉활동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갑"이 기획 비용을 부담하고 "을"이 자신의 가맹점에서 소요되는 판촉물의 제작 비용 및 직접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단, 그 밖의 비용 부담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갑"은 판촉활동의 횟수, 시기, 방법, 내용 등을 가맹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필요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5. "을"은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갑"이 계획, 주관하는 "갑"이 배포한 상품교환권과 무료이용권 및 할인권 등(이하 "쿠폰"이라 한다)에 대한 판매, 사용 등의 공동 판촉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을"에게 정당한 불참 이유가 있을 때 그 내용을 사전에 "갑"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전 항의 경우 "갑"이 발행하는 쿠폰은 그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하고 "을"이 회수한 쿠폰에 대한 보상은 "갑"과 "을"이 사전에 협의한 바에 의하여 정당하게 시행한다.
7. "을"은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판촉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단,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팸플릿, 리플렛, 카다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하누소갈비살'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작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 제4장 계약의 해지 및 종료

### 제31조 (계약의 해지)

1.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위반사실을 명시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문서를 "을"에게 2회 이상 통지하고 2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1) "을"이 제25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더 이상 가맹점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2) "을"의 귀책사유로 제8조 내지 13조의 이행을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개점이 지연되거나 이에 따른 금전 지급에 관하여 "을"이 별도 약정한 날짜를 지키지 않는 경우
2.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사실을 명시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문서를 "갑"에게 통지하고 1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갑"이 제6조에서 부여한 영업지역 외에 부당하게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설치하는 경우
  - (2) "갑"이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공급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
  - (3) "갑"이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을 경우

3.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갑" 또는 "을"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2) "갑" 또는 "을"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 (3) "갑" 또는 "을"이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 1)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2)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3)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한 경우
  - (2)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통보받고도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한(시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 (3)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4) "을"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갑”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갑”이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5)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6) "을"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 (7)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제1항 내지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을"의 사정에 의하여 "을"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을"은 2개월 전에 "갑"에게 계약 해지의 내용을 통보하고 "갑"이 제시하는 해지 합의를 작성하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6. "갑"이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갑"은 이 사실을 미리 "을"에게 알리고 협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32조 (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본 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운영권이 만료된 것으로 보며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 "을"은 "갑"에게 사용 허가를 받은 영업표지가 인쇄된 간판 및 기타 표시물을 즉시 철거 하여야 한다. 이때 철거 비용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 외에는 "을"이 부담한다.
2. "을"은 "갑"으로부터 사용 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변형 하여 "갑"이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의 권리범위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을"은 "지정업체"로부터 지원 받은 기기 등을 임의 철거를 하지 못하며 지원받은 품목을 반환해야 한다.
4. 이 경우, 계약 종결을 이유로 "갑"이 이미 제공한 공급품을 "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단, 상호협의하여 반환품목을 결정할 수 있다.
5. "을"은 가맹점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계약서, 매뉴얼 등)를 반환 하거나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6. "을"은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갑"에 대한 신용을 해지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3조 (손해배상)

1.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2. "을"이 제17조(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을"은 "갑"에게 가입비의 2배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3.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이외에 "갑" 또는 "을"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4조 (가맹금 반환의 예외)

1. 가맹점 오픈 후, 최초 계약기간 내에 해지된 경우 "갑"이 "을"로부터 지급 받은 가맹비는 소멸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갑"이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을"이 가맹금반환 청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가맹금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가맹금 중 일부가 반환 될 수 있다.
2. 반환되는 금전이 있을 경우, 그 범위에 대하여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지급된 금전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반환 범위가 변경 될 수 있다.

### 제35조 (영업의 양도 등)

1. "을"은 "을"의 개인적 적성과 경영마인드 및 자금동원능력이 반영되어 "본 계약"상 그 지위가 결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제3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하거나 사업자 명의 변경, 대리행사 및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이하 "양도 등"이라 한다)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을"은 전 항의 승인을 "양도 등"에 앞서 "갑"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3. "갑"은 전 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갑"은 "을"과 그 대상자가 본 조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승인을 거절할 수 없으며,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갑"이 전 항에 따라 승인을 한 경우 대상자는 승낙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갑" 및 "을"과 양수계약 또는 별도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때, "을"은 잔여기간에 대한 가맹점운영권을 포기하기로 한다. 다만, 자신의 점포의 권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만일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갑"은 전 항에 따른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5.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득한 경우 "을"의 양수인에게는 잔여계약 기간에 대하여 가맹점 운영권이 인정되며, 양수인은 양수에 따른 교육이수 및 양수인의 부담비용(양수가맹비 및 이행보증금 등 부담비용)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신규 가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6. 제3자에게 양도를 한 양도인 "을"은 제6조의 영업지역 내에서 자신 또는 제3자의 이름으로 '하누소갈비살' 과 동종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7. "갑"의 사전승인 없이 이루어진 "양도 등"은 "갑"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갑"은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8. "갑"이 '하누소갈비살'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을"은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을"은 새로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으면 기존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제36조 (영업의 승계)

계약기간 중 "갑"으로부터 아래의 사항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전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에 따른 영업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단, "을"의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갑"에게 통지하고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직계 존비속에게 영업을 승계하는 경우
2. 점포를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 제5장 기타

### 제37조 (지연이자)

1. "본 계약"에 규정된 금전지급의무 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부담하는 금전지급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 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이율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2. "을"이 미지급한 채무액은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먼저 발생한 채무부터 우선 충당한다.

### 제38조 (통지방법)

1. "본 계약"상 필요한 상대방에 대한 모든 통지는 서면으로 하되, 팩스(FAX), 인편 또는 우편으로, "갑" 또는 "을"의 계약상 주소지로 배달되어야 한다.
2. 단, 별도의 주소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39조 (동의와 권리행사)

1. "갑" 또는 "을"은 "본 계약"에 의하여, 상대방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경우,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갑" 또는 "을"이 상대방과 특정한 계약 위반 사실에 대한 손해 배상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의 효과는 당해 사실에 국한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이전에 발생한 손해 배상 청구권이 소멸 되지 않는다.

### 제40조 (계약의 효력 및 변경)

1. "본 계약"은 "갑"과 "을" 사이에서 논의된 모든 사항을 규정한 최종 계약이다. 따라서 양당사자는 "본 계약"이 체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교환된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상담, 권고, 협의 등을 이유로 "본 계약"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다.
2. "본 계약"은 상호 서면에 의한 합의가 없으면 변경되지 아니한다.

### 제41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1. "갑"과 "을"간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갑"의 임직원 포함)과 "을" 양당사자가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해결 노력을 한다.

2. 양 당사자의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가맹거래사 또는 가맹사업 거래 분쟁조정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을 받을 수 있다.
3. 이 계약에 관한 소송 관할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갑"과 "을"이 합의 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4.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 제42조 (보험)

1. "을"은 "본 계약" 기간 동안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을"의 종업원, 기타 고객 등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에 충분한 보험(화재, 영업배상, 고용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에게 ‘하누소갈비살’ 가맹점사업자들이 일괄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의 가입을 권유할 수 있다.
3. 제2항의 권유에 의하여 "을"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업자, 보험의 종류, 피보험자는 "을"이 정한다.
4. "을"은 보험업자, 보험 종류, 피보험자 등 보험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보험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신규가입을 증명하는 보험증서 사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을"이 가입한 보험이 손해배상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추가로 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갑"이 이러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 하여 "을"의 배상책임이 면책되거나 "갑"에게 배상책임이 이전되지 아니한다.

#### 제43조 (특약사항)

---



---



---



---



---



---



---



---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을"은 계약내용에 대해 "갑"과 충분히 협의 검토하였으며,  
본 계약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체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 년 월 일

갑

대 표 자 : 장 세 은 (인)  
사업자등록번호 : 127-86-05828  
법 인 명 : (주) 하누소푸드시스템  
주 소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비암리 225-13  
연 락 처 : 031)876-2015, 02)998-8363

을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점 포 명 :  
주 소 :  
연 락 처 :

상기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서명날인 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별첨 #1 가맹점의 표시 및 계약기간

1. 점 포 소 재 지 :            시            구            동            번지
2. 예상점포의규모 :                            (                            m2)
3. 상            호 :                            점
4. 가맹점사업자명 :
5. 약 기 간 : 20   .   .   .   - 20   .   .   .

## 별첨 #2 영업지역 표시도

아래의 지도 표기와 같이 영업지역을 확인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별첨 #3 납입금 예치 약정서

본인이 (주)하누소푸드시스템의 하누소갈비살 가맹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맹점을 개점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주)하누소푸드시스템에 지급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원]

구 분	내 역	금 액 (원)	비 고
가맹비	가입비 외	10,000,000	예치금
부가세(VAT)		1,000,000	
합계		11,000,000	
교육비		2,000,000	예치금
부가세(VAT)		200,000	
합계		2,200,000	
계약이행보증금	계약이행 담보 외	3,000,000	예치금
총계		16,200,000	

본인은 (주)하누소푸드시스템과 ‘하누소갈비살’ 가맹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기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계약 즉시 아래의 계좌로 예치하겠습니다.

구분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예치계좌	우리은행	1005-401-811831	(주)하누소푸드시스템
입금일자	20 . . .	계약자	(인)